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「주차장법」 및 「주택법」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,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

3. 주요내용

-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
(안 제13조2①, 안 제13조2②)
 - 부지면적의 0.6% 이상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(별표 2)
 - 시설종류 상위법 적용(장레식장, 수련시설, 창고시설 등 추가)
 -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.5대,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.3대

4. 참고사항

-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제2항
- 「주차장법시행령」 제6조제1항(별표 1)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 및 제6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,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규정
(안 제13조의2①, 안 제13조의2②)
 - 부지 면적의 0.6% 이상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(별표 2)
 - 상위법 적용에 따라 장레식장, 수련시설, 창고시설 등 추가)
 -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.5대,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.3대

○ 검토 결과

- 「주차장법」 과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,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
-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의 경우 「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6항이 2009. 11. 5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, 별도의 조례개정이 없이도 상위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, [별표2] (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) 시설물 5의 설치기준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